

의안번호	제 311 호
의 결 연 월 일	2015년 12월 일 (제 344 회)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5년 11월 일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1
----------	-----

발의연월일 : 2015년 11월 23일

발의자 : 김영주, 임희무, 엄재창,
연철흠, 윤은희, 최광옥,
이의영

1. 개정이유

- 주민투표 청구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규정되어 있어 서명기피의 주요 원인이 되며, 주민의 개인정보 유출위험이 있어
-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투표 청구관련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하고,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투표 청구관련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안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
- 주민투표청구서 등 관련서식 정비(별지 제1호~제7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주민투표법」, 「개인정보보호법」

나. 관련부서 협의 : 행정국 자치행정과와 협의함.

다. 예산조치 :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충청북도 주민투표 조례

제8조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를 “생년월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9조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을 “생년월일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 작성요령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상 생년월일을,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각각 기재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충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재(국내거소신고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2호서식 】

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총 청 북 도 지 사 (인)			
※ 작성요령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상 생년월일을,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각각 기재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충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재(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3호서식 】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충청북도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 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 작성요령 <o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상 생년월일을,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각각 기재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충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재(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4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충청북도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지사 (인)				
※ 작성요령 <o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상 생년월일을,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각각 기재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충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재(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시.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청구인대표자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구인 서명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상 생년월일을,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각각 기재
-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재(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별지 제6호서식 】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7호서식 】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상 생년월일을,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각각 기재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충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재(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u>	<u>충청북도 주민투표 조례</u>
<p>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주민투표 실시에 찬성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u>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u>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주민투표 실시에 찬성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u>생년월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u>,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u>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u> 청구의 대상,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p>	<p>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u>생년월일</u>, 청구의 대상,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p>
<p>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생 략)</p> <p>② 도지사는 <u>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u>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p> <p>③ (생 략)</p>	<p>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현행과 같음)</p> <p>② 도지사는 <u>생년월일을</u>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관련법령 발췌

□ 주민투표법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①~⑧ 생략

⑨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요청, 청구인서명부의 작성·제출방법, 서명에 대한 심사·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③ 생략